2020년도 제134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

I. 회의 개요

- o 일 시: 2020. 7. 9.(목요일), 10:30
- o 장 소: 한국저작권보호원 회의실
- o 참 석 자: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제3분과위원회 위원 3명 참석
 - 심의위원: 신창환(분과위원장), 심장섭, 최현용 위원
- o 회의 진행순서 및 안건
 - 1. 개회선언 및 인사말씀분과위원장

 2. 안건상정분과위원장
 - **<의결안건**〉 ※ 안건 검토 보고 :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성원영 전문위원
 -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 3. 폐회선언 분과위원장

Ⅱ. 회의내용 및 결과

1. 의결안건

- o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 주요내용: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물등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 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 2,639건(안건번호 제2020-66808호~68315호)
- 회의결과: 안건번호 제2020-66808호는 자동차 동호회 카페에서 댓글에 이메일 주소를 기재하면 이메일로 음원 파일을 보내주겠다는 사안임. 심의대상 게시물에 이메일 주소와 함께 다수의 댓글들이 달려있어 불법복제물 전송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시정권고를 가결함.

안건번호 제2020-66809호~66824호는 블로그에서 국내 서버에 저장된 불법복제물로 연결되는 직접 링크를 제공한 사안임. 심의대상 게시 물은 시정권고의 대상이 되는 "불법복제물등"에 해당할 수 있으나, 링크를 제공하는 게시물보다 불법복제물 자체에 대한 삭제 또는 전 송중단의 시정권고를 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심도 깊은 논의를 위해 해당 안건을 전체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함.

안건번호 제2020-66825호는 안건번호 제2020-66809호 게시물의 직접 링크를 통해 연결되는 '☆☆☆ ☆☆' 웹페이지에서 불법복제물을 스 트리밍 방식으로 제공한 사안임. 해당 안건은 앞서 전체위원회에 회 부된 안건들인 안건번호 제2020-66809호~66824호와 관련되어 있으므 로 함께 전체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함.

그 외에 불법복제물등에 해당하는 심의안건 게시물 2,621건은 삭제 또는 전송중단의 시정을 권고하고 복제·전송자에 대하여는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의결함.

2. 안건상정

- o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의한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 성원영 전문위원: 금주 금요일 개최 예정이었던 4분과 심의가 의사 정족수 미달로 개최가 취소되어 급작스럽게 제2020-134회를 금일 개 최하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림. 심의의 긴급성으로 인해 시간을 지체 할 수 없어 부득이하게 금일 개최하게 되었음.

(심의안건의 저작물명, 저작권자 등 목록을 제시하면서)심의위원님들 께서는 PC에 접속하여 금일 심의안건의 저작물명, 저작권자 등 목록을 직접 확인해 주시기 바람. 금일 심의안건의 권리자를 위하여현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 등에 관여하고 있거나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지정된 위원은 저작권법 시행령 제67조의4 및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규정 제11조에 따라 심의위원회의심의·의결에서 제척됨. 위원님들께서는 제척 사유 해당 여부를 밝혀주시기 바람.

- A 위원, B 위원, C 위원: 해당 없음.
- 신창환 분과위원장: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람.
- 성원영 전문위원: 금일 심의안건은 46개 온라인서비스 이용자들이 게재한 2,639건의 복제물에 대한 시정권고 심의임. 안건번호는 제202

0-66808호~68315호임. 관련 법령과 심의 기준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음.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0-66808호는 익명의 민원인이 신고한 건임. 이메일 주소를 남기면 음원 파일을 보내주겠다는 카페 게시물에 대한 사안임.

(심의대상 게시물의 댓글을 보여주면서)심의대상 게시물의 댓글에는 이메일 주소와 함께 "□□□□^^", "■■■■■■■■■■■■■■■■■■■□□^^!!", "△△△△△△△△△△△△△△○ 적혀 있음. 댓글 마지막에 게시자가 "▲▲ ▲▲!!!!!!"라고 댓글을 남긴 것을 볼 때 2020. 7. 1. 11시13분부터 12시까지 댓글로 이메일 주소를 남긴 이용자에 한하여 음원 파일을 전송한 것으로 보임.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A 위원: 해당 카페의 규모가 어떻게 되는지?

- 성원영 전문위원: 해당 카페는 24만 명 이상의 회원이 있는 대규모 커뮤니티 카페임. 2007년부터 운영되었음. 지난 전체위원회에서 논의한 사안과 달리 본 건은 모두 공개 댓글이 달려 있음. 공개 댓글을 통해 "불법복제물등"이 전송된 사실을 간접 확인할 수 있음.
- 신창환 분과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모니터링 자료, 심의대상 게시물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바탕으로 안건번호 제2020-66808호 에 대해 의결해 주시기 바람.
- B 위원: 심의대상 게시물에 다수의 댓글이 남겨져 있어 저작권법상 불법복제물이 '전송'된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함.
- A 위원: 심의대상 게시물에 대해 시정권고함이 타당함.
- C 위원: 같은 생각임.
- 신창환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안건번호 제2020-66808호는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는 것으로 가결함.
- 성원영 전문위원: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0-66809호~66824호는 익명의 민원인 신고를 기초로 보호원이 블로그를 조사하여 심의를 요청한 사안임. 민원인이 URL을 특정하지 않고 신고하였기 때문에 보호원이 자체적으로 블로그를 조사하여 심의 요청함. 블로그 이용자가 '▽▽▽ ▽▽▽▽ ▽▽▽'의 15개

영상물로 연결되는 직접링크를 설정한 게시물을 각각 올린 사안임. 심의대상 게시물은 총 16개임. 각 심의대상 게시물의 이미지를 클릭 하면 '☆☆☆ ☆☆' 또는 '▼▼▼ ▼▼'에 게시된 불법복제물로 연결 됨.

(심의대상 게시물의 URL에 직접 접속하여 게시물을 보여주면서)안 건번호 제2020-66810호 심의대상 게시물에 게재된 이미지를 클릭해 보겠음. 해당 이미지를 클릭하면 '☆☆☆ ☆☆' 게시물로 연결됨. ('☆☆☆ ☆☆'에 게시된 영상물을 재생하면서)영상물이 공중의 이용 에 제공되고 있음.

- A 위원: 심의대상 게시물에서 이미지를 클릭하면 '☆☆☆ ☆☆'로 연 결된다는 말씀이신지?
- 성원영 전문위원: 그러함.

(심의대상 게시물의 URL에 직접 접속하여 게시물을 제시하면서)안 건번호 제2020-66823호의 심의대상 게시물에 직접 접속해보겠음. 심 의대상 게시물에 게재된 이미지를 클릭해 링크를 타고 들어가 보겠음.

('☆☆☆ ☆☆'에 게시된 영상물을 재생하면서)영상물이 공중의 이용에 제공되고 있음.

- A 위원: 심의대상 게시물에서 이미지를 클릭하면 '☆☆☆ ☆☆'로 연결되는데 왜 게시자는 '슈슈슈 슈슈'가 아닌 '☆☆☆ ☆☆'로 링크를 설정한 것인지?
- B 위원: 안건번호 제2020-66823호 심의대상 게시물의 게시일은 2016

년임. 당시 '☆☆☆ ☆☆'가 '��� ��'보다 컨버팅이 잘 되거나 저장공간이 더 커서 '☆☆☆ ☆☆'로 연결되는 링크를 설정하지 않 았나 생각됨.

- A 위원: 그렇다면 블로그 게시자가 해당 영상저작물을 '☆☆☆ ☆☆' 에서 판매하는 것인지?
- B 위원: 블로그 게시자가 '☆☆☆ ☆☆'에서 해당 영상저작물을 판매하는 것은 아니고 블로그에서 링크만 타고 들어가면 유튜브 채널과 같이 영상물을 무료로 감상할 수 있도록 해놓은 것임.
- 성원영 전문위원: 참고로 해당 영상물을 누가 게시하였는지는 확인 되지 않음. '☆☆☆ ☆☆' 영상물 게시자와 블로그 내 링크 설정 게 시자가 동일인인지는 확인되지 않음.
- C 위원: '☆☆☆ ☆☆'에 게시된 영상물은 공개되지 않은 게시물인 지?
- 성원영 전문위원: 그러함. 비공개 게시물임.
- A 위원: '☆☆☆ ☆☆'는 불법복제물에 관해 어떠한 입장을 취해야 하는지?
- 성원영 전문위원: 불법복제물이 자사의 서비스를 통해 전송되고 있음을 알게 된다면 전송 중단의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임.

- B 위원: 다른 심의대상 게시물에 직접 접속해보니 상당수가 이미 전 송 중단되어 있음.
- A 위원: 누가 '☆☆☆ ☆☆'에 해당 영상물을 업로드하였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는지?
- 성원영 전문위원: 현재로서는 확인이 어려움. 해당 블로그 이용자가 직접 영상물을 업로드하였을 수도 있고, 제3자가 올린 영상물의 UR L을 해당 블로그 이용자가 우연히 알게 되어 링크를 걸어놓았을 가능성도 있음. 해당 영상물의 URL이 공개되어 있지 않는 경우라면 '☆☆☆ ☆☆'에 영상물을 업로드한 당사자가 아니라면 URL 주소를 알기 어려움.

두 게시자가 서로 다른 사람이라면 심의대상 게시물의 링크를 '저작권 침해 정보'라고 볼 수 있어 방조의 책임이 성립할 수 있을 것임. 반면에 두 게시자가 동일인이라면 링크 설정 게시물을 전송하는 행위는 전송권 침해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이라고 보아 당연히 시정권고를 할 수 있을 것임.

- C 위원: '☆☆☆ ☆☆'의 경우 해당 영상물을 보는 사람이 많으면 권리자에게 금전적인 이익이 발생하는지?
- 성원영 전문위원: '☆☆☆ ☆☆'와 '▼▼▼ ▼▼'는 유튜브 콘텐츠 ID 와는 다르게 권리자에게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음.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본 건처럼 불법복제물이 저장되어 있는 서버가 국내에 있거나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국내에 상거소를 두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링크를 제공하는 게시물에 대

해 시정 조치를 권고하기보다는 불법복제물이 위치한 웹페이지의 게 시물에 대해 시정 조치를 권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함.

- A 위원: 전문위원께서는 불법복제물을 직접 제공하고 있는 '☆☆☆ ☆☆' 게시물에 대해서도 시정권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시는지?
- 성원영 전문위원: 행정조치의 개입을 최소화하기 위해 링크를 제공하는 심의대상 게시물이 아닌 불법복제물을 직접 제공하고 있는 '☆☆☆☆☆' 게시물에 대해서만 시정권고를 해야 한다고 생각함.

전문위원은 시정권고가 불가능한 해외 서버인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링크 게시물에 대해 시정조치를 한다는 판단 하에 본 건에서는 국내 서버인 '☆☆☆ ☆☆'에 저장된 불법복제물에 대해서만 시정권고를 하는 것으로 검토하였음.

안건번호 제2020-66809호~66824호에 대해 심의 의결하시기 전에 안 건번호 제2020-66825호를 같이 보고하도록 하겠음. 안건번호 제2020-66825호는 안건번호 제2020-66809호~66824호와 관련되어 있는 안건 임.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0-66825호는 이명의 민원인이 신고한 건임. 안건번호 제2020-66825호 심의대상 게시물은 안건번호 제2020-66809호의 링크로 연결되는 게시물임. (안건번호 제2020-66809호 심의대상 게시물을 직접 보여주면서)안건 번호 제2020-66809호 게시물의 이미지를 클릭하여 안건번호 제2020-66825호 게시물로 직접 접속해보겠음.

(안건번호 제2020-66825호 심의대상 게시물의 영상물을 재생하면서)' ☆☆☆ ☆☆'에서 '▽▽▽ ▽▽▽▽ ▽▽'을 우리말 자막과 함께 스트리밍 방식으로 제공하고 있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하시어 안건번호 제2020-66809호~668 24호, 안건번호 제2020-66825호의 가·부결 여부와 전체위원회 회부 여부를 논의해 주시기 바람.

- C 위원: 안건번호 제2020-66825호와 관련해 적법하게 '☆☆☆ ☆☆' 이용권을 가진 이용자가 다른 장소에서 나중에 해당 영상물을 보기 위해 따로 저장해놓은 것을 제3자가 우연히 해당 URL을 알게 되어 블로그에 해당 링크를 게시한 경우에는 시정권고 대상 여부와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함.
- 성원영 전문위원: 클라우드, 나스 등 개인용 스토리지 서비스에 저장된 음원이나 영상이 그러한 경우에 해당될 수 있을 것임. 이용자가사적 이용을 위해서 음원이나 영상물을 저장하였는데 우연히 인터넷을 통해 접속하게 된 경우, 해당 URL이 알려져서 링크로 이용할 가능성은 낮다고 생각함.
- B 위원: '☆☆☆ ☆☆'와 '슈슈슈 슈슈'의 이용약관을 보면 개인용 스 토리지로 사용하지 못한다는 조항이 있을 것임.
- C 위원: 해당 행위가 이용약관에 위배된다고 하더라도 적법한 이용 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해당 사이트에 저작물을 올려두는 행위가 저작권침해에 해당하느냐의 문제는 별개의 문제임.
- 성원영 전문위원: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는 저작재산권 제한 사유에

해당하여 허용됨. 하지만 전송 행위는 공중의 이용에 저작물을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

- B 위원: 예를 들어 영화 구매 계약의 경우에는 매우 한정적인 조건에서만 사적 복제·전송을 허용하고 있음.
- C 위원: 사적인 장소에 저장해두고 송신이 되는 것은 전송으로 볼 수 없을 것임.
- 성원영 전문위원: 스토리지 개념으로 이용자는 해당 서비스에 합법 적으로 획득한 콘텐츠를 저장해두고 제3자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비 공개 설정을 할 수 있음. 하지만 비공개 설정을 하지 않고 제3자가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권한을 허용한 경우 적극적인 업로드 행 위가 아닐지라도 "making available to the public", 즉 전송으로 보 는 것이 옳다고 판단됨.
- B 위원: 소극적 방조 책임이 있다고 보는 것인지?
- 성원영 전문위원: 방조가 아니라 해당 행위 그 자체가 전송이라는 의미로 말씀드린 것임.

 수 있을 것임.

- B 위원: '☆☆☆ ☆☆' 이용자가 전송의 가능성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바람직함. 일반적으로 사적 이용을 위해서는 클라우드와 같은 스토리지 서비스를 이용하지 '☆☆☆ ☆☆'를 이용하지는 않음. 다음부터는 '☆☆☆ ☆☆'와 '▼▼▼ ▼▼'에 게시된 영상게시물과 링크를 설정한 게시물을 동시에 심의 요청해야 한다고 생각함.
- C 위원: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함.
- B 위원: 링크 게시물과 영상 게시물을 동시에 심의 요청하는 것이 어렵다면 링크 게시물을 불법복제물의 근거자료로만 제시하는 방법이 있을 것임. 불법복제물을 제공하고 있는 원천 게시물에 대해 시정권고를 하게 된다면 링크 게시물에 대해 시정권고를 할 필요성이 없어짐.
- 신창환 분과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심의안건 목록을 확인하시어 안 건번호 제2020-66809호~66824호, 제2020-66825호에 대해 의결해 주시기 바람.
- B 위원: 안건번호 제2020-66809호~66824호의 경우 국내 서버에 저장된 불법복제물로 연결되는 링크를 제공한 사안으로 불법복제물을 제공하고 있는 게시물 자체가 시정조치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해당 안건들을 전체위원회에 회부해야 한다고 생각함. 안건번호제2020-66825호는 링크 게시물과 연결된 불법복제물 게시물 사안으

로 가결 의견이기는 하나 안건번호 제2020-66809호~66824호와 관련되어 있으므로 함께 전체위원회에 회부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임.

- C 위원: 동의함. 심의위원 전원과의 사안 공유를 위해 모두 전체위 원회에 회부해야 한다고 생각함.
- A 위원: 같은 생각임.
- 신창환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심의위원 전원과의 사안 공유 및 심도 깊은 논의를 위해 안건번호 제2020-66809호~66824호, 제2020-66825호 모두 전체위원회에 회부하는 것으로 결정함.
- 성원영 전문위원: (불법복제물 제공화면, 파일 다운로드 화면, 불법복제물 재생화면을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0-66826호~68315호는 모두 불법복제물을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으로 특별한 쟁점 없이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시정권고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건임. 심의위원님들께서는 PC에 접속하여 안건 목록 및 증거자료 등을 직접 확인해주시기 바람.
- 신창환 분과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심의 안건 목록과 모니터링 자료를 확인하시어 안건번호 제2020-66826호~68315호 게시물에 대해 의결해주시기 바람.
- A 위원, B 위원, C 위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모두 확인하면서)안건번호 제2020-66826호~68315호는 모두 불법복제한 영 상물, 음악, 컴퓨터 프로그램, 게임, 출판, 만화를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으로 모두 시정권고의 필요성이 인정됨.

- 신창환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안건번호 제2020-66826호~68315호 게시물에 대해서는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경고의 시정조치를 권고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의결함.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는 아래와 같이 의결함)

"안건번호 제2020-66809호~66825호는 심의위원 전원과의 사안 공유 및 심도 깊은 논의를 위해 전체위원회에 회부함. 안건번호 제2020-66808호, 제2020-66826호~68315호는 불법복제물등의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그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의결함."

4. 폐회 선언

o 신창환 분과위원장이 제134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폐회를 선언함.

2020년 제134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이 상기와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20, 7, 16,

분과위원장 신창환

위원 심장섭

위원 최현용